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안전조치 결정 시 광산 규모 고려 등〉
■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109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안전조치 결정 시 광산 규모 고려	3
2. 광산안전도의 작성 및 제출 방법 결정 시 광산 규모 고려	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인선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2. 12.
3. 회부연월일 : 2025. 2.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조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광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각종 조치 중 “구호조직의 설치” 의무를 부여하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30명 이상의 광산근로자가 종사하는 광산에 대해 광산구호대를 조직·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그 외의 광산에 대해서는 광산안전사무소장이 주변 지역 광산과 공동으로 광산구호대를 조직·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에 따른 의무를 권고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별도의 조치수단이 없어 사실상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더불어, 현행법 제17조에서 광산안전도 작성·제출의무를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내용의 경우 시행규칙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에 따른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제5조와 함께 개선이 필요해 보임.

이에 광산 안전관리를 위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부여한 광

산구호대조직 및 광산안전도 제출 면제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광산 사업장 현장에 부합하는 광산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17조).

Ⅲ. 검토의견

1.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안전조치 결정 시 광산 규모 고려

개정안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을 상시근로자 수 등 광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하여야 할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은 <u>대통령령으로</u> 정한다.	제5조(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상시근로자 수 등 광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u> -----.

현행법 제5조1)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구호조직의 설치 등 광산의

1) 「광산안전법」

제5조(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낙반(落盤), 붕괴, 용수(湧水), 가스의 누출, 가스·탄진(炭塵)의 폭발, 자연발화, 화재의 방지 및 통기(通氣)의 유지
2. 가스·먼지·소음·진동·폐석·광물찌꺼기·갱내수·폐수 및 광연의 처리에 수반되는 위험과 광해의 방지
3. 기계·기구·화약류와 그 밖의 재료·동력 및 불의 취급에 수반되는 위험의 방지
4. 광업시설의 보전
5. 구호조직의 설치, 안전장비의 확보, 광산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와 안전규정의 제정
6. 지하자원의 보호
7. 광해의 방지와 그 밖의 안전조치

② 제1항에 따라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하여야 할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하여야 할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 제4조²⁾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5조³⁾는 안

2)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4조(안전조치) ①

1. 암반의 추락 및 붕괴에 대한 안전조치: 지지대 등의 설치·유지, 노천채굴장에서의 붕괴·추락 방지시설의 설치·유지 등 안전조치
 2. 용수(湧水) 방지를 위한 구갱(舊坑) 등에 대한 안전조치: 굴진(掘進) 및 채굴의 제한, 방수설비의 설치·유지, 선진천공(先進穿孔: 탐사 등의 목적으로 갱도개설 전 미리 구멍을 뚫는 작업을 말한다) 및 안전광주[안전광주: 갱내의 주요시설(갱도를 포함한다)의 안전을 위해 채굴하지 않고 남겨두는 광체 기둥을 말한다]의 설치
 3. 화재의 방지조치: 방화설비·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발화물질 또는 가연성물질 등의 안전보관·저장 및 처리, 불의 사용 제한 등 화재 방지조치
 4. 통기의 유지 및 갱내 가스에 대한 안전조치: 갱내 공기질의 유지·측정, 통기시설의 설치·유지, 갱내 가스에 대한 조치, 불 및 가스 발생시설의 사용 제한 등 안전조치
 5.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조치: 메탄가스로부터의 위험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유지, 비상시 송전 정지, 감전 방지, 접지·과전류로부터의 보호 등 전기설비의 안전조치
 6. 운반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운반시설의 안전장치 설치·유지, 운반시설의 운행에 대한 안전조치
 7. 통행 및 작업 장소에 대한 안전조치: 연결통로의 설치, 사람의 안전통행을 위한 통로 유지, 먼지의 날림 방지, 소음·진동 방지, 안전작업 및 재해 시의 연락을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고기압에서의 작업금지 등 안전조치
 8. 갱외시설 및 배수시설 등에 대한 안전조치: 티플러(tippler: 차를 기울여서 짐을 부리는 장치) 및 선광장(選鑛場) 등에서 날리는 먼지의 처리 및 방지, 기관·공기압축기·가스집합용접장치·기중기·일반기계장치 및 배수시설의 안전한 설치·유지
 9. 광해(鑛害)의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안전조치
 - 가. 토지의 굴착에 의한 광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지반침하의 측정, 갱도와 채굴한 자리의 되메우기 및 그 밖에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조치
 - 나. 지반 침하, 폐석 또는 광물찌꺼기에 의한 광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집적장(集積場)의 안전한 설치·유지
 - 다. 광업폐기물에 의한 광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폐기물 투기 금지, 안전한 보관 및 처리 등 안전조치
 - 라. 먼지의 날림 또는 소음·진동에 의한 광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및 사고위험 시의 응급조치
 - 마. 갱수(坑水) 또는 폐수에 의한 광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갱수·폐수의 배출 금지와 갱수·폐수의 발생시설 및 처리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사고위험 시의 응급조치
-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갑종탄광의 갱도에 전기설비 또는 전기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메탄가스의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조치사항 중 광산구호대의 조직의무를 규정하면서 30명 이상의 광산 근로자가 종사하는 광산의 경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산구호대를 조직·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반면, 30명 미만의 광산근로자가 종사하는 광산에 대하여는 광산안전사무소장이 주변 지역 광산과 공동으로 광산구호대를 조직·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구호조직의 설치 의무를 부여한 취지와 달리 시행령에서 30명 미만의 광산근로자가 종사하는 광산에 대하여 구호조직의 설치 여부를 권고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하여야 할 조치의 세부사항을 상시근로자 수 등 광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3)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5조(광산구호대의 조직)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30명 이상의 광산근로자가 종사하는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구호대를 조직·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은 30명 미만의 광산근로자가 종사하는 광산에 대하여 주변 지역 광산과 공동으로 광산구호대를 조직·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작업장 부근의 적당한 장소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응급 구호 용품을 준비하고, 광산구호대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자체 광산구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3항에 따른 응급구호 용품의 설치장소·사용방법 및 구급방법에 대하여 광산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재해예방과 광산구호대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광산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산구호대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법률에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조치사항의 구체적 내용만을 위임하였는데 하위법령에서 조치의무사항을 권고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므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① 개정안은 구호조직의 설치를 포함한 모든 안전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을 광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호조직의 설치 외의 다른 안전조치의 경우 광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⁴⁾, ② 법률의 위임근거 없는 하위법령에서의 의무 면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하여야 할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면서 광산의 규모를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보다는 소규모 광산의 광업권자·조광권자에 대한 구호조직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방안이 보다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 제5조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25조⁵⁾는 제5

4) 현행법 시행령은 광산구호대의 조직과 관련하여서만 광산의 규모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조치사항을 달리 정하고 있고, 암반의 추락 및 붕괴, 용수 방지를 위한 구멍, 화재 방지, 통기 유지 및 갱내 가스 등 여러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광산의 규모에 따른 구분 없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조치사항을 정하고 있음(각주 2의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4조 참조).

5) 「광산안전법」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에 따른 광산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하여야 할 조치사항은 죄형법정주의원칙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6).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에 따른 광산근로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5. 제9조, 제13조제1항·제4항 또는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광산을 운영하거나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규정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광산을 운영한 자
 8. 제1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6)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이며 개정수요가 많아 입법환경이 유동적인 사항의 경우에는 하위법령에의 위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의 세부사항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광산안전도의 작성 및 제출 방법 결정 시 광산 규모 고려

개정안은 광산안전도의 작성 및 제출 방법을 상시근로자 수 등 광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광산안전도의 작성)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u>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안전도(鑛山安全圖)를 작성하여 광산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그 부분(副本)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광산안전도의 작성) ----- ----- <u>상시근로자 수 등 광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u> ----- ----- ----- -----.

현행법 제17조⁷⁾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광산안전도를 작성하여 광산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그 부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산안전도의 작성 및 제출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규칙 제29조⁸⁾는 광산안전도의 작성방법에 대

7) 「광산안전법」

제17조(광산안전도의 작성)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안전도(鑛山安全圖)를 작성하여 광산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그 부분(副本)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광산안전도의 작성방법) 법 제17조에 따른 광산안전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

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30조⁹⁾는 광산안전도 등의 제출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매년 12월 31일 광산안전도 3부 또는 전자도면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상시 광산근로자를 10명 이하로 고용하는 노천채굴 광산으로서 광산안전사무소장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산안전도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서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게 광산안전도의 작성 및 제출의무를 부여한 취지와 달리 시행규칙에서 광산의 규모 등에 따라 광산안전도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상위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광산안전도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상시근로

해야 한다.

1. 축척은 5천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2. 갱내 또는 노천채굴장에서는 같은 축척으로 평면도와 단면도를 지형도 위에 작성할 것
3. 갱내채굴광산에서는 갱구, 인도, 통기갱도·운반갱도·수직갱도, 기타갱도, 채광작업장, 굴진장소, 채굴한 장소, 구갱도, 선풍기의 위치 및 종류, 통기방향·통기량 및 가스함유율, 통기문·기류혼합방지시설[풍교(風橋)], 배수용펌프, 권양기, 선광장·폐석장, 광물찌꺼기의 집적장, 폐수정화시설 및 그 밖에 안전상 필요한 사항을 적을 것
4. 노천채굴광산에서는 노천채굴장, 주요 시설 및 그 밖에 안전상 필요한 사항을 적을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소장이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적을 것

9)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광산안전도 등의 제출)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광산안전도 3부 또는 전자도면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광산근로자를 10명 이하로 고용하는 노천채굴광산으로서 사무소장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산안전도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사업을 휴지하거나 폐광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당시의 광산안전도, 채광원도 및 장소별 생산실적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광산안전도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 수 등 광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법률에서 광산안전도의 작성·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작성·제출 방법만을 위임하였는데 하위법령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광산에 대하여 광산안전도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므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법률의 위임근거 없는 하위법령에서의 의무 면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광산안전도의 작성 및 제출 방법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면서 광산의 규모를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보다는 소규모 광산 등의 광산안전도 제출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방안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법 제26조제2항제7호¹⁰⁾는 현행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광산

10) 「광산안전법」

제26조(과태료) ①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작업 개시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2.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및 광산근로자
3.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전문기관
4.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5. 제8조제2항, 제13조제3항 또는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6. 제16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안전도를 작성하여 광산사무소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그 부분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처분대상 행위에 면제를 부과하는 것은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64

-
7. 제17조를 위반하여 광산안전도를 작성하여 광산사무소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그 부분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